

위험관리기법

강원희 <보험연수원 전임강사>

<전호에서 계속>

3) 물건별 화재보험의 계약사례

(1) 일반적인 유의사항

(가) 특수건물과 같이 법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적이라 해도 손해보험은 만약의 이재에 대비한 것이므로 위험에 대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보험가입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나) 일반보험이 되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각종 할인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특약의 첨부로 보험료는 다소 추가지급이 되더라도 보험가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라) 화재위험 외에도 필요할 경우 도난위험이나 풍수재위험 등을 추가시켜 이로 인한 위험의 복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택물건(공동주택)

4층 이상의 주택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번지

소유자 : ○ ○ ○

건물구조 : 벽돌조 슬라브 4층, 주택, 50평

보험가입 시점에서의 신축가격을 평당 1백만원으로 보고 신축한지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으로 책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화재보험요율서에 의한 요율적용요건을 보면 ① 등지 : 1등지 ② 건물급수 : 2급 ③ 기본요율 : 0.027%(1등지 2급)이므로

<화재보험료>

$50,000,000\text{원} \times 0.027\% = 13,500\text{원}$ 이다.

(보험가입금액) (기본요율) (연간보험료)

특수건물의 경우 주택건물은 통상의 화재보험료에서 30%가 할인되므로 납입보험료는

$13,500\text{원} \times (1 - 0.3) = 9,450\text{원}$

(연간보험료) (할인공제) (납입보험료)

<신체배상보험료>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건물화재보험료의 10%를 가산해야 한다.

$9,450\text{원} \times 10\% = 945\text{원}$

(화재보험료)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9천4백50원에 신체배상보험료 9백45원을 합산한 1만3백95원이 연간총보험료가 된다.

부보여부	부담위험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의무보험	화재보험 (특수건물)	50,000,000원	9,450원
	신체손해배상보험	1인당 사망 500만 원, 부상 400만원	945원
	소계		10,395원

(3) 백화점

대규모 백화점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소유자 : ○ ○ ○

건물구조 :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하 3층, 지상 10층

연건평 13,000평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 백화점 건물은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등의 비중이 높고 내장재도 고급자재를 사용한 점을 감안, 평당 신축가격을 2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2백60억원으로 책정한다.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요율서에 의한 요율적용요건을 보면 ① 등지 : 1등지 ② 건물급수 : 1급 ③ 기본요율 : 0.105% ④ 직업할증 : 0.220%이므로

백화점건물로서의 기본요율은 $0.105\% + 0.220\% = 0.325\%$ 이다.

한편 이 백화점에는 옥내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경

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소화설비규정(한국보험개발원 발행)에 적합하게 완비되어 있어 이들 할인의 합산은 88%에 이르나 상한선이 60%이므로 소화설비를 할인한 적용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0.325\% \times (1 - 0.6\%) = 0.130\%$$

그런데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고액보험계약할인」이 적용되므로 이를 감안한 연간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0\text{억} \times 0.13\% = 260,000\text{원} \dots\dots 260,000\text{원}$$

$$10\text{억} \times 0.13\% = 130,000\text{원} \times 0.98 = 127,400\text{원}$$

$$20\text{억} \times 0.13\% = 260,000\text{원} \times 0.96 = 249,600\text{원}$$

$$50\text{억} \times 0.13\% = 650,000\text{원} \times 0.94 = 611,000\text{원}$$

$$\underline{160\text{억} \times 0.13\% = 2,080,000\text{원} \times 0.92 = 1,913,600\text{원}}$$

260억	3,380,000원	3,161,600원
------	------------	------------

위의 3백16만1천6백원이 할인을 적용한 연간보험료이므로 여기에 특수건물할인을 감안하면 최종보험료가 산정된다.

$$3,161,600\text{원} \times (1 - 0.1) = 2,845,440\text{원}$$

(연간보험료) (특수건물할인율) (특수건물화재보험료)

한편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약을 첨부해야 하므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적용요율은 백화점의 경우 14%,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2,845,440\text{원} \times 14\% = 398,362\text{원}$$

(화재보험료) (신체보험료)

따라서 특수건물에 대한 총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된다.

$$2,845,440\text{원} + 398,362\text{원} = 3,243,802\text{원}$$

(화재보험료) (신체보험료) (연간총보험료)

〈상품 등 동산화재보험〉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 화재보험 및 신체배상보험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백화점 경영에는 이 밖에도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의

화재위험이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또 법에 의한 신체배상책임보험도 1사고당 보상한도가 5백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배상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임의의 추가보험계약 체결을 고려하는 것이 위험관리 기법상 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다.

— 동산의 내용 —

총상품재고가액 : 10억원

상품의 위험등급별재고가액 내역

- ┌ A급(화재위험도가 낮은 것) 5천만원
- ├ B급(화재위험도가 중정도의 것) 8억원
- └ C급(화재위험도가 높은 것) 1억5천만원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기본보험료를 동산위험등급별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text{A급} : 0.105\% + 0.22\% + 0.030\% = 0.355\%$$

(기본요율) (직업할증) (동산할증) (동산보험요율)

$$\text{B급} : 0.105\% + 0.220\% + 0.060\% = 0.385\%$$

$$\text{C급} : 0.105\% + 0.220\% + 0.120\% = 0.445\%$$

이상의 산출보험료에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화설비할인을 적용해야 최종적용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text{A급} : 0.355\% \times (1 - 0.6) = 0.142\%$$

(동산보험요율) (소화설비할인) (최종적용요율)

$$\text{B급} : 0.385\% \times (1 - 0.6) = 0.154\%$$

$$\text{C급} : 0.445\% \times (1 - 0.6) = 0.178\%$$

따라서 상품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A급} : 50,000,000\text{원} \times 0.142\% = 71,000\text{원}$$

(보험가입금액) (최종요율)

$$\text{B급} : 800,000,000\text{원} \times 0.154\% = 1,232,000\text{원}$$

$$\text{C급} : 150,000,000\text{원} \times 0.178\% = 267,000\text{원}$$

계 1,000,000,000원	1,570,000원
------------------	------------

〈신체배상한도 5백만원 초과하는 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는 5백만원이기 때문에 다수의 급여소득이 높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보험으로서의 효용이 약할 것이다. 따라서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책과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보장책도 아울러 마련하는 것이 위험관리기법의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백화점시설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은 기본보상한도액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상한도액을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계수를 적용하게 되어있다.

—보험가입내용—

- 대인배상 : 1인당—1억원
1사고당—10억원
- 대물대상 : 1사고당—5천만원
1사고당 공제액—100만원
- 기본보상한도액을
대인 :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대물 : 1사고당 200만원으로 한 경우의 보험요율은 대인 평당 1백50만원, 대물 평당 20만원이므로 위와 같이 보상한도액을 인상할 경우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한편 대인배상은 의무보험한도인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하게 되므로 대인을 1사고당 5백만원의 공제액을 설정하였으며, 대물의 경우에는 소손해 면책을 위해 1사고당 1백만원의 공제액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대인배상>

$$150\text{원} \times 13,000\text{평} = 1,950,000\text{원}$$

(기준보험료)(연건평) (기본보험료)

$$1,950,000\text{원} \times (2.24 - 0.245) = 3,890,250\text{원}$$

(기본보험료) (보상한도 (공제액 (연간보험료)
인상계수) 할인계수)

<대물배상>

$$20\text{원} \times 13,000\text{평} = 260,000\text{원}$$

(기준보험료) (연건평) (기본보험료)

$$260,000\text{원} \times (1.730 - 0.098) = 424,320\text{원}$$

(기본보험료) (보상한도 (공제액
인상계수) 할인계수)

따라서 3,890,250원+424,320원=4,314,570원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연간총보험료가 된다.

이상의 보험계약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백화점으로서의 위험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된다.

구분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	연간보험료	
의무 보험	화재보험(건물)	260억원	2,845,440원	
	신체손해배상책임	1인당 500만원	398,362원	
	소 계		3,243,802원	
임의 보험	화재보험(상품)	10억원	1,570,000원	
	배상책 임보험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3,890,250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424,320원
	소계		4,314,570원	
합계		7,558,372원		

(4) 공장(전기기구제조업)

소규모 공장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화재보험 외에 기업휴지보험(企業休止保險)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재지 : 경북 포항시

- 건물구조 : A공장(권선)-3급구조건물 60평
- B공장(절연)-3급구조건물 30평
- C공장(조립)-4급구조건물 100평
- 사무실-4급구조건물 40평
- 창고-3급구조건물 30평
- 변전소-3급구조건물 10평
- 식당-3급구조건물 60평

동산 : 총가액 350,000,000원(원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및 부산물, 포장재료 등)

건물의 평당 시가액을 50만원으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화재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건물 화재보험료〉

A 공장-30,000,000원×0.608%=182,400원
(보험가입금액) (건물요율)

B 공장-15,000,000원×0.608%=91,200원

C 공장-50,000,000원×0.936%=468,000원

사무실-20,000,000원×0.554%=110,800원

창고-15,000,000원×0.360%=54,000원

변전소-5,000,000원×0.220%=11,000원

식당-30,000,000원×0.554%=166,200원

계 135,000,000원 1,083,600원
(건물총보험가입금액) (건물화재보험료)

〈동산 화재보험료〉

A 공장 및 B 공장에 분산수용되고 있는 B급 동산
200,000,000원×(0.608%+0.06%)=1,336,000원-①
(보험가입금액) (기본요율) (동산할증) (동산보험료)

창고에 수용되고 있는 C급 동산
150,000,000원×(0.360+0.120)=720,000원-②
①+②.....2,056,000원
(동산보험료)

따라서 이 공장의 건물과 동산의 합계 화재보험료
는 3백13만9천6백원이 된다.

〈기업휴지보험〉

공장이 화재로 휴업하는 동안의 경상비(인건비·물
건비)나 상실이익을 보상하는 기업휴지특약에 가입하
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1억원

약정보상기간 : 3개월

면책기간 : 7일간

기업휴지보험특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은 다음 공식

과 같다.

보험가입금액 × 기초요율 × 약정보상 기간계수 × 면책계수
적용요율

또 기초요율은 화재보험요율에 바닥면적을 곱하여
산출(공장건물은 2배, 부속건물은 1배)한다.

A 공장-0.608×60평×2=72.9

B 공장-0.608×30평×2=36.5

C 공장-0.936×100평×2=187.2

창고-0.360×30평=10.8

변전소-0.220×10평=2.2
420평 309.6

따라서 기초요율은 $\frac{309.6}{420.0} \approx 0.7371$

100,000,000원×0.737×0.610×0.950=427,000원
(보험가입금액) (기초요율) (약정보상 기간계수) (기업휴지
보험료)

이 공장의 화재보험료와 기업휴지보험료의 합계액
은 다음과 같다.

3,139,600원+427,000원=3,566,600원

이상의 보험계약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㉞

부담손해구분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직접손해	건물화재보험	135,000,000원	1,083,600원
	동산화재보험	350,000,000원	2,056,000원
	계	485,000,000원	3,139,600원
간접손해	기업휴지보험	100,000,000원	427,000원
합 계		585,000,000원	3,566,600원

방심하면 나의불행 살펴보면 나의안진